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81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천준호·최기상·한민수

정태호 · 김현정 · 이해식

박균택 • 이강일 • 박성준

민병덕 • 모경종 • 김영배

김주영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 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 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 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 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조의5조제1항제4호의2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자기자본(법인 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으로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할 것

제3조의5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자기자본"을 "순자산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호"를 "제3호. 제4호의2"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3조의5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순자산액"이란 자산의 합계	
	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② (생 략)	제3조(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3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금융		
위원회(이하 "시·도지사등"이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제3조의5조제1항제4호의2	
	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u>료</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u>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u>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u>다</u> 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4. (생 략) <신 설>

- 5. (생략)
-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u>자기자본</u>을 갖출 것. <u>다만, 대</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제2호, <u>제3호</u>,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 7. (생 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① (생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2. ~ 8. (생략)

③ ~ ⑧ (생 략)

\bigcirc	(혂행과	7) O /
1)	(OF OH 1/4-	25-1
. 1 /	(1 7 7 7	-

-----<u>제1</u> 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

- 1. (현행과 같음)
-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 ~ 8. (현행과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